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·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함(안 제24조제1항제5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7. 09. ~ 07. 13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 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5.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탄 : <u>톤당 62,283원</u> ② · ③ (생 략)	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탄 : <u>톤당 62,283원. 다만, 2026</u> <u>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금을</u> <u>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35